

(앞 면)

☐ 자동차운송사업 ☐ 자동차운송알선사업 ☐ 자동차대여사업		양도 · 양수	☐ 인가신청서 ☐ 신 고 서		처리기간 5일
① 합병하려는 법인	② 갑	③ 법인의 명칭			
		④ 주 소	(전화번호 :)		
		⑤ 대표자 성명	⑥ 주민등록번호		
	⑧ 을	⑦ 법인의 명칭			
		⑨ 주 소	(전화번호 :)		
		⑩ 대표자 성명	⑪ 주민등록번호		
⑫ 합병 후 존속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		⑬ 법인의 명칭			
		⑭ 주 소	(전화번호 :)		
		⑮ 대표자 성명			
<16>사 업 의 종 류					
<17>노선 또는 사업구역					
<18>합병의 방법 및 조건		<19>합병하려는 일자		. . .	
<20> 합 병 사 유					
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, 제55조, 제55조의12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, 제40조,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					
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(갑) (서명 또는 인) 피합병법인 대표자(을) (서명 또는 인) 합병후 존속(설립)법인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서울특별시시장 · 직할시장 · 도지사					
구비서류 1.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.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. 기존법인의 경우 : 정관 및 등기부등본, 임원 명부 각 1통 4. 법인설립의 경우 : 정관(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),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,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5.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. 노선도(노선업종에 한함) 1부					수 수 료 3,000원

33331-23611민

210mm×297mm

'95.1.17. 승인

(신문용지 54g/m²)

※이 신청서(신고서)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: 생략